**세 무 법 인(유한) 정 관 (sample)**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세무법인 홍길동(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8. 4대보험 사무업무대행 업무

9.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10. 위 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은 주사무소(본점)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5, 1602호에 둔다.

② 본 법인은 분사무소(지점)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본동 101에 둔다.

**제4조 (자본의 총액)** 본 법인의 자본의 총액은 이억(200,000,000)원으로 한다.

**제 2 장 사원, 출자와 이사**

**제5조 (출자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본 법인의 자본은 이를 2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제6조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출자)** 사원인 세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출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원 김일동 (670505-111111) 5,000좌 금50,000,000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9

사원 이일동 (710801-1111111) 5,000좌 금50,000,000원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94

(일부 생략)

**제7조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사인 세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다음과 같다.

이사 김일동 (670505-111111)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9

이사 이일동 (710801-1111111)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94

(일부 생략)

**제8조 (결손금의 보전)**

①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2억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원들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9조 (지분의 양도제한)**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는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타법인출자의 제한)** 본 법인은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 3 장 사원총회**

**제11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에 이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의장)** 대표이사가 사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사원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일주일전에 회일과 회의 목적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결의방법)**

①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사원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특별결의는 총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 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좌수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4 장 임원, 이사회와 업무집행 등**

**제16조 (임원)** 본 법인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이사는 사원 중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8조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19조 (보선)**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그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21조 (대표이사)**

① 본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업무를 총괄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③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대행한다.

**제22조 (보수)** 본 법인의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3조 (업무집행방법)**

① 본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소속세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② 본 법인이 재무제표, 신고서 등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본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한다.

③ 본 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본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본 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본 법인이 수행 또는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본 법인의 이사회에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계 산**

**제24조 (영업연도)** 본 법인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계산서류의 승인)** 대표이사는 매 영업년도 말로부터 정기사원총회일 1주일전까지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④ 상기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⑤ 영업보고서

**제26조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본 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임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기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손익계산)** 본 법인의 손익계산은 영업년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차액을 손익금으로 하고, 총손금에서 총익금을 공제한 차액을 결손금으로 한다.

**제28조 (이익금의 처분)** 본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29조 (이익배당)**

① 본 법인의 손익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후가 아니면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30조 (장부의 열람) 본 법인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6 장 해산 및 청산**

**제31조 (해산사유)**

① 본 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사원총회의 결의

2. 합병

3. 등록의 취소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에서 정하는 특별결의에 의한다.

**제32조 (예치금)**

① 본 법인이 제31조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세무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준비금은 존속 또는 신설되는 세무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야 하며, 반환받을 이사는 해산 당시의 이사로 하고 그 금액은 해산 당시의 출자비율에 의한다.

제33조 (자산의 처분) ①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자산의 처분 방법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후의 잔여재산은 법인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34조 (청산인의 임면)** 본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 (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의 제1기 영업연도는 본 회사 성립일로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6조 (기타)** 이 정관 및 세무사법, 상법, 기타 관계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 9. 10부터 시행한다.

20 . . .

세무법인 **○○○**

구성원 세무사 **○○○**

구성원 세무사 **○○○**

구성원 세무사 **○○○**